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안덕근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」의 ‘24.7.31 시행에 따라, 송변전설비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 위원회로 통합·운영됨에 따라 관련

3. 주요내용

- 가. 송·변전 사업자 임원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참여를 위한 사업자 대표 위원 정원 추가(제3조)
- 나. 송변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각자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인원 추가(제7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타 부처 합의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 중 “또는”을 “등”으로, “3명”을 “4명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1명”을 “2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회의 구성)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 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 원사업(이하 “지원사업”이라 한 다)을 관장하는 공무원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 다.	제3조(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 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발전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 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<u>3명</u> 이내	2. ----- 등 ----- ----- ----- ----- <u>4명</u> ---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7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간사 <u>1명</u> 을 두 며,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 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 명한다.	제7조(간사) ----- ----- <u>2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	
연 락 처	(044) 203 - 3931